

의안번호	2202924
의 퇴 인	전종덕의원
회 답 일	2024. 8. 21.
추 계 번호	24B2885

필수농자재 지원에 관한 법률안

【비용추계서】

I. 비용추계 결과

- (일부추계) 제정안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필수농자재 지원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필수농자재 가격 등의 조사를 실시하는 경우, 추가재정소요는 2025년 13억 8,900만원, 2029년 13억 2,400만원 등 2025년부터 2029년까지 5년간 총 66억 8,500만원(연평균 13억 3,700만원) 이상으로 추계됨

[표 1] 제정안에 따른 추가재정소요: 2025~2029년

(단위: 백만원)

	2025	2026	2027	2028	2029	합계	연평균
종합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시행(안 제5조 제1항) - 필수농자재 지원 종합계획	65	—	—	—	—	65	13
필수농자재 가격 등의 조사(안 제9조)	1,324	1,324	1,324	1,324	1,324	6,620	1,324
추가재정소요	1,389	1,324	1,324	1,324	1,324	6,685	1,337

주: 본 추계 결과는 추계가 가능한 조문에 대하여 대해 일정 예산의 편성을 전제로 추계한 것으로, 향후 실제 추가재정소요는 달라질 수 있음

자료: 농림축산식품부 제출자료 등을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II. 재정수반요인

연번	조·항(조제목)	주요내용	비고
1	안 제3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필수농자재 가격의 폭등에 대비하여 농업경영 안정을 위한 대책을 수립하고 이에 필요한 재원을 마련하기 위하여 노력·협력하여야 함	의무규정
2	안 제5조(종합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시행)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필수농자재의 지원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수농자재 지원을 위한 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함)을 5년마다 수립·시행하여야 함(제1항)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종합계획의 내용에 따라 연도별 필수농자재 지원을 위한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함)을 수립·시행하여야 함(제3항)	의무규정

연번	조·항(조제목)	주요내용	비고
		시·도지사는 종합계획 및 시행계획에 따라 <u>필수농자재 지원</u> 을 위한 <u>실행계획</u> (이하 “실행계획”이라 함)을 <u>1년마다 수립·시행</u> 하여야 함(제6항)	
3	안 제6조(필수농자재의 지원)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및 시·도지사는 <u>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u>, 「농지법」 제2조제5호에 따라 자경하거나 같은 조 제6호에 따라 위탁경영을 통하여 타인의 농지에서 실제로 농작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하는 농업인에 대하여 <u>필수농자재의 구입 등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u>을 할 수 있음. 이 경우 지원은 다음 해 6월 30일까지 하여야 함 1. 통계청이 매년 <u>조사·발표하는 농가구입가격지수</u>(농업경영체의 가계 및 경영활동에 투입된 품목의 가격지수를 말함) 중 <u>재료비, 경비, 및 자산구입비의 가격지수가 전년도 대비 100분의 10 이상 상승한 경우</u> 2. 통계청이 매년 <u>조사·발표하는 농가교역조건지수</u>[농가가 생산하여 판매하는 농산물과 농가가 구입하는 생활용품 또는 농기자재의 가격 상승폭을 비교하여 농가의 채산성(採算性)을 나타내는 지수를 말함]가 <u>전년도 대비 100분의 10 이상 하락한 경우</u> 3. <u>필수농자재의 가격이 최근 5년간 필수농자재의 평균 가격 대비 100분의 5 이상 상승한 경우</u> 4. <u>그 밖에 농자재 및 에너지 가격이 폭등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u>	재량규정
4	안 제8조(필수농자재 지원을 위한 예산)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6조제1항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u>필수농자재 지원에 필요한 자금을 세출예산에 반영</u> 하도록 <u>기획재정부장관에게 요구</u> 하여야 함	의무규정
5	안 제9조(필수농자재 가격 등의 조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필수농자재의 지원에 관한 정책의 수립 및 시행을 위하여 <u>필수농자재의 사용 현황, 원가 및 판매가격 등을 정기적으로 조사</u> 하고 그 결과를 공표하여야 함(제1항)	의무규정
6	안 제10조(위반행위의 조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필수농자재의 원활한 지원을 위하여 <u>다음 각 호의 위반행위의 발생 현황을 정기적으로 조사</u>하고 그 방지를 위한 대책을 수립하여야 함(제1항)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6조에 따른 필수농자재의 지원을 받거나 타인으로 하여금 지원을 받게 하는 행위 2. 제7조를 위반하여 필수농자재의 구입을 위한 지원금을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행위	의무규정

Ⅲ. 비용추계의 전제와 상세내역

1. 재정수반요인별 추계 여부

연번	조·항(조제목)	추계여부	추계여부
1	안 제3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	• 미대상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농업인이 필수농자재 가격 폭동에 대비하여 농업경영 안정 대책 수립 및 재원 마련에 노력·협력할 수 있도록 책임성을 강조하는 선언적 규정으로 추계대상에서 제외
2	안 제5조(종합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시행)	○	•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타 종합계획 등 사례 참고(제1항)
		—	• 미대상(제3항 및 제6항) ·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수립하는 필수농자재 지원을 위한 시행계획(매년), 시·도지사가 수립하는 필수농자재 지원을 위한 실행계획(매년)은 기본계획을 바탕으로 자체적으로 수립가능할 것으로 예상되므로 추계대상에서 제외
3	안 제6조(필수농자재의 지원)	×	• 제3호 ·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및 시·도지사가 필수농자재 구입 등에 필요한 재정적 지원을 하는 경우 추가재정소요가 예상됨 · * (필수농자재) 농약, 비료, 사료 및 농업용 비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자재 및 농업용 유류 및 전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에너지 · 제정안에 따른 필수농자재 지원 비용추계를 위해서는 대략 다음과 같은 산식이 필요함 추가재정소요 $= \sum_{i,j} (\text{필수농자재 구입물량} \times \text{지원단가} \times \text{지원율})_{i,t}$ · 이때, 각 필수농자재의 지원조건은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 · <u>농가구입가격지수 중 재료비, 경비, 및 자산구입비의 가격지수가 전년도 대비 100분의 10 이상 상승한 경우</u> · <u>농가교역조건지수가 전년도 대비 100분의 10 이상 하락한 경우</u> · <u>필수농자재의 가격이 최근 5년간 필수농자재의</u>

연번	조·항(조제목)	추계여부	추계여부
4	안 제8조(필수농자재 지원을 위한 예산)		<u>평균 가격 대비 100분의 5 이상 상승한 경우</u> · 그 밖에 <u>농자재 및 에너지 가격이 폭등한 경우</u>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 <u>[참고자료 1] 농가판매 및 구입가격조사 개요</u> <u>참고</u> · t는 추계기간(향후 5년), · i는 유형별 필수농자재 ($i=1$일 때 농약, $i=2$일 때 비료, $i=3$일 때 사료, $i=4$일 때 농업용 비닐, $i=5$일 때 농업용 유류, $i=6$일 때 농업용 전기, ... 등) · 그러나 유형별 필수농자재 지원 조건 충족 여부, 세부적인 지원기준, 각 농가의 구입·사용량 등의 예측이 불가하고, 필수농자재 지원의 세부적인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규정¹⁾하고 있으므로, 현시점에서 추가재정소요를 합리적으로 추계하는 데 한계가 있음 · 참고로 농림축산식품부는 개별법에 따라 비료, 사료, 면세유 등을 지원하고 있음 ※ [참고자료 2] 농업경영체에 대한 필수농자재 및 농업에너지비용 등 지원 현황 및 [참고자료 3] 농사용 전력판매단가 참고
5	안 제9조(필수농자재 가격 등의 조사)	○	- 유사사례 참고 - 농림축산식품부 내 유사 실태조사
6	안 제10조(위반행위의 조사)	×	- 제3호 -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 필수농자재 부정 지원, 지원금의 목적외 용도 사용 등 필수농자재 지원 위반행위의 발생 현황을 정기적으로 조사하고 방지대책을 수립하는 경우 추가재정소요가 발생할 수 있으나, 현 시점에서는 조사대상 및 방법, 투입 인력 등 구체적 조사계획을 예측할 수 없어 합리적인 비용추계에 한계가 있음

1) 안 제6조(필수농자재의 지원) ① ~ ③ (생략)

④ 제1항에 따른 필수농자재 지원의 세부적인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비용추계의 총괄적 전제

- 제정안 부칙은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추계기간은 2025년부터 2029년까지 5년으로 함

3. 재정수반요인별 상세 추계내역

가. 종합계획의 수립·시행(안 제5조제1항)

- 제정안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필수농자재 지원을 위한 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함)을 5년마다 수립·시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추가재정소요가 발생함
- 본 추계에서는 종합계획 수립에 소요되는 연구용역 비용에 대해 농림축산식품부 및 농촌진흥청에서 공고한 타 종합계획·기본계획 등을 참고하여 6,500만원으로 가정
 - 농림축산식품부 및 농촌진흥청에서 최근 공고한 종합계획 및 기본계획은 약 5천만원에서 8천만원 규모로, 평균 6,500만원 규모

[표 2] 농림축산식품부 및 농촌진흥청에서 수행한 종합계획·기본계획 사례

(단위: 백만원)

공고기관	용역명	공고금액	공고일
농림축산식품부	농식품바우처 지원사업 기본계획 수립 방안 연구	80	2024. 05. 16.
	제1차 스마트농업 육성을 위한 기본계획 수립방안 연구	60	2024. 03. 19.
	25~29년 공익직불제 기본계획 수립방안 연구	75	2023. 06. 12.
	농업·농촌 에너지전환 기본계획 연구	60	2021. 04. 12.
농촌진흥청	원예특용작물 이상기상 대응 기술개발 종합계획 수립 및 공동연구사업 기획 연구용역	70	2024. 06. 10.
	농업 에너지 이용현황 조사 방법론 및 국가승인통계 기반 정립 용역	50	2024. 07. 02.
	발농업 생산성 향상 연구 성과분석 및 중장기 연구방향 설정 연구 용역	60	2024. 06. 27.
	평균	65	

자료: 조달청 나라장터 <<https://www.g2b.go.kr/index.jsp>>

- 추계 결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5년마다 필수농자재 지원을 위한 종합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2025년부터 2029년까지 총 6,500만원으로 추계

[표 3] 필수농자재 지원을 위한 종합계획 수립에 따른 추가재정소요: 2025~2029년
(단위: 백만원)

	2025	2026	2027	2028	2029	합계
종합계획 수립	65	—	—	—	—	65

자료: 농림축산식품부 및 농촌진흥청의 다 종합계획·기본계획 수립 비용을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나. 필수농자재 가격 등의 조사(안 제9조)

- 제정안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필수농자재의 사용 현황, 원가 및 판매 가격 등을 정기적으로 조사하고 그 결과를 공표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추가재정소요가 발생함
- 조사의 대상, 방법 및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규정²⁾하고 있으므로, 본 추계에서는 유사사례인 농산물 유통소비정보조사(3031·324) 사업 및 예산을 참고하여 추계
 - 실태조사 및 통계자료 작성 비용은 1,324백만원으로 가정
 - － ‘수급정보조사’ 및 ‘국내가격정보조사’의 2024년도 예산 평균 금액
- ※ 이때, 실태조사 및 통계자료 작성 비용은 추계기간 동안 변동하지 않는 것으로 가정

[표 4] 농산물 유통소비정보조사 내 유사 실태조사 현황: 2024년 기준
(단위: 백만원)

세부사업	내역사업	조사 내용	2024년 예산
농산물 유통소비정보조사 (3031·324)	수급정보조사	주요 농산물 수급정보 생산·전파로 선제적 수급 대책 수립 및 비축사업등 정책사업의 효율적 추진 지원	1,144
	국내가격정보조사	농수산물 도·소매가격 등 수집·제공으로 시장거래주체의 출하·거래에 관한 의사결정 및 합리적 소비지원으로 농산물수급안정 도모	1,504
평균			1,324

자료: 농림축산식품부 내 유사사례를 참고하여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2) 안 제9조(필수농자재 가격 등의 조사) ① (생략)

② 제1항에 따른 조사의 대상, 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추계 결과, 필수농자재 사용현황 및 가격조사 등에 소요되는 비용은 2025년부터 2029년까지 총 66억 2,000만원으로 추계

[표 5] 필수농자재 사용현황 및 가격조사 등에 따른 추가재정소요: 2025~2029년
(단위: 백만원)

	2025	2026	2027	2028	2029	합계
필수농자재 사용현황 및 가격조사 등	1,324	1,324	1,324	1,324	1,324	6,620

자료: 농림축산식품부, 「2024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사업설명자료(Ⅱ·1)」, 2024.1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IV. 부대의견

- 본 추계 결과는 추계가 가능한 조문에 대하여 대해 일정 예산의 편성을 전제로 추계한 것으로, 향후 실제 추가재정소요는 달라질 수 있음

V. 작성자

- 성명

국회예산정책처	분석관	과장직무대리
경제비용추계과	이주호	박인재

- 대표연락처

성명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이주호	02·6788·3746	progress@nabo.go.kr

[참고자료 1] 농가판매 및 구입가격조사 개요

(통계청)³⁾

□ 조사목적

- 농가가 생산하는 농산물의 농가수취가격과 농가의 영농 및 소비생활에 필요한 재화와 용역의 구입가격을 조사하여 지수를 편제하고, 농가경제를 가격측면에서 분석하는 데 필요한 기초자료 제공

<주요 용어설명>

농가판매가격지수	농업경영활동으로 생산된 농산물 및 축산물 등 75개 품목의 2020년 기준 (2020=100)의 가격지수
농가구입가격지수	농업경영체의 가게 및 경영활동에 투입된 407개 품목의 2020년 기준 (2020=100)의 가격지수
농가교역조건지수	농가가 생산하여 판매하는 농산물과 농가가 구입하는 생활용품 또는 농기자재의 가격 상승폭을 비교하여 농가의 채산성을 파악

□ 법적근거

- 통계작성의 근거
 - － 「통계법」 제17조 및 동법 시행령 제22조에 의거한 지정통계(승인번호 제306001호)
- 자료제출 요구 근거
 - － 「통계법」 제32조 및 제33조에 의거하여 응답의무가 있으며 응답한 내용은 통계작성 목적으로만 사용됨

□ 조사주기 ※ 작성주기: 분기(1월, 4월, 7월, 10월)

- 농가판매가격조사: 월 1회 중앙조사 실시
- 농가구입가격조사: 월 1회(15일 기준) 지역조사 실시

3) 통계청 보도자료, “2023년 농가판매 및 구입가격조사 결과,” 2024. 1. 26.
<https://kostat.go.kr/board.es?mid=a10301040600&bid=11695&act=view&list_no=429224>
(통계청 홈페이지 > 새소식 > 보도자료 > 물가·가계 > 농가판매및구입가격조사)

□ 조사대상 및 조사항목

가. 조사대상

- 조사대상품목: 농가판매품 75개, 농가구입품 407개
 - 농가판매품 모두 중앙조사(이 중 49개 품목은 농협자료 활용)
 - 농가구입품 중 지역조사 6개, 중앙조사 401개(소비자물가 364개, 중앙조사 37개)

나. 지역조사 항목(농가구입가격조사)

- 구입품목: 월별 농업노동임금(남·여, 1일), 농기계임차료

□ 연도별 농가판매 및 농가구입가격지수

(2020=100)

연월	농가판매 가격지수					농가구입 가격지수						농가 교역 조건 지수
	총지수	곡물	청과물	축산물	기타 농산물	총지수	가계 용품	재료비	노무비	경비	자산 구입비	
가중치	1000.0	188.8	328.1	383.4	99.7	1000.0	471.8	243.6	50.2	133.1	101.3	·
2017	92.0	74.1	91.2	103.9	94.6	95.1	97.4	91.6	87.6	94.9	96.6	96.7
2018	92.7	92.7	88.5	95.4	99.7	96.6	98.6	91.1	92.4	99.4	98.6	96.0
2019	93.2	96.0	87.6	95.7	100.1	98.1	98.9	93.9	96.3	103.2	99.3	95.0
202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2021	110.6	107.9	105.3	115.0	116.3	105.0	102.5	108.4	108.9	107.3	103.4	105.3
2022	107.7	93.5	108.4	109.5	125.1	120.1	107.4	145.8	122.9	133.1	99.1	89.6
2023	108.7	95.4	120.2	101.8	122.3	120.4	111.2	141.4	132.1	127.3	98.2	90.2
20.4/4	102.2	101.0	103.0	101.7	103.3	100.1	100.3	101.1	103.1	96.8	99.8	102.0
21.1/4	117.4	114.5	128.6	108.6	120.0	102.0	101.7	102.2	102.8	101.2	103.3	115.2
21.2/4	112.6	112.7	106.5	118.2	110.8	103.8	102.1	105.4	108.1	104.9	104.0	108.5
21.3/4	111.5	103.3	107.1	119.9	109.7	106.5	102.8	112.2	111.2	108.6	105.4	104.7
21.4/4	105.0	99.6	94.1	113.1	119.6	107.8	103.6	113.9	113.4	114.7	101.1	97.4
22.1/4	107.9	104.8	102.9	106.6	135.0	115.1	105.2	137.6	113.8	121.7	98.6	93.8
22.2/4	110.5	95.5	112.0	113.5	122.5	120.2	107.2	143.7	122.4	137.0	100.8	92.0
22.3/4	112.6	88.4	125.0	110.2	126.4	122.7	108.5	149.2	127.1	140.4	99.8	91.8
22.4/4	102.4	89.6	100.3	107.6	113.0	122.5	108.7	152.8	128.4	133.2	97.3	83.5
23.1/4	104.6	85.8	112.4	98.1	139.5	119.9	109.9	144.8	129.4	124.6	95.7	87.2
23.2/4	106.4	99.9	112.2	102.7	114.0	119.5	110.5	140.8	132.4	124.4	97.6	89.1
23.3/4	112.3	100.4	130.9	101.3	116.2	120.6	111.8	140.9	133.0	125.7	99.5	93.2
23.4/4	112.1	94.8	128.5	105.3	117.2	121.7	112.6	139.1	133.5	134.3	99.7	92.1

[참고자료 2] 농업경영체에 대한 필수농자재 및 농업에너지비용 등 지원 현황

(농림축산식품부 제출자료)

□ 필수농자재 및 농업에너지비용 지원 사업

○ 사업 개요

사업명	지원개요	법적근거
무기질비료 가격보조 및 수급안정 지원 (2260·377)	비료 가격 급등에 따른 농업경영비 부담 경감과 식량안보 확보를 위해 무기질비료 구입비 일부 지원(인상차액의 80%)	「비료관리법」 제7조(비료의 공급)
농가사료직거래활성화지원 (3733·329)	축산농가가 외상구매 대신 현금거래 등으로 사료를 저렴하게 구매할 수 있도록 저리의 사료구매 정책자금 지원	「축산법」 제3조(축산발전시책의 강구)
농업자금이차보전 (1038·301)	농업인을 대상으로 농업자금(정책자금, 부채대책자금) 저리 지원에 따른 금융기관의 이차차액을 보전	「농어업인 부채경감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설농가 유가보조금 한시 지원(3031·305 / 306)	농업용 면세유, 전기료의 급격한 인상에 따른 소규모 시설원예농가의 난방 고통을 경감할 수 있도록 시설원예농가에 한시적으로 면세유 유가연동보조금을 지원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7조

자료: 농림축산식품부 제출자료

○ 지원 예산: 2021~2024년

(단위: 백만원)

	세부사업 (내역사업)	주요내용	2021	2022	2023	2024
필수농자재	무기질비료 가격보조 및 수급안정 지원 (2260·377) · 무기질비료 가격보조 및 수급안정 지원	비료 가격상승에 따른 농가 경영비 부담 경감을 위해 무기질비료 구입비 일부(가격상승분의 80%) 지원 * (지원조건) 국비 30%, 지방비 20%, 농협 30%, 자부담 20%	—	180,099	100,000	28,815
	농가사료직거래 활성화지원 (3733·329) · 농가사료구매자금 지원	축산농가에 사료구매를 위한 자금을 저리로 융자 지원	345,000	355,000	355,000	300,000

	세부사업 (내역사업)	주요내용	2021	2022	2023	2024
	농업자금이자보전(1038·301)					
	· 특별사료구매자금	축산농가에 사료구매를 위한 자금을 저리로 용자 지원	—	10,878	34,694	31,730
	· 사료구매자금	축산농가에 사료구매를 위한 자금을 저리로 용자 지원	—	—	14,384	20,834
농업에너지 비용(유류비)	시설농가유가보조금 한시지원 (3031·305/306) · 시설농가 면세유 유 가연동보조금 한시 지원	고유가 상황 지속으로 경영비 중 난방비 비중이 높은 시설원예농가에 한시적('22.10~12) 난방비 부담 완화를 위해 유가 지원 추진 · 지원단가: 월별('22.10~12월)·유종별 평균가격-기준가격('22년 5월 유종별 평균 가격의 88.5%) × 50%(국고보조율)	—	15,118	—	6,972

자료: 농림축산식품부 제출자료

□ 농업용 면세유 지원현황

※ “농업용 면세유류 제도”는 「조세특례제한법」에 의한 조세감면 제도

<농업용 면세유류 제도 개요>

- 목적: 농업 경영비 부담 완화를 위해 농업기계용 유류 구입가격에 포함된 모든 세액에 대해 면세 적용('86.3.1.~)
- 근거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의2
- 면제 세금(5종): 교통세·소비세·교육세·자동차세·부가세
- 면세 유종(6종): 경유, 등유, 휘발유, 중유, 윤활유, LPG
- 면세유 공급대상 농기계: 트랙터·콤바인 등 42개 기종

<최근 4년간 농업용 면세유 제도에 따른 면세액 현황: 2020~2023년>

구분	연도	휘발유	경 유	등 유	중 유	윤활유	LPG	합계 (kl/백만원)
공 급 량 (kl)	'20	85,299	843,127	442,469	29,713	259	11,726	1,412,593
	'21	87,015	852,466	439,787	28,902	218	14,053	1,422,441
	'22	87,284	860,222	422,408	30,461	200	15,211	1,415,786
	'23	86,769	847,081	363,843	28,611	187	14,034	1,340,525
면 세 액 (백만원)	'20	74,568	540,509	63,833	2,621	125	1,298	682,954
	'21	75,972	546,705	80,165	2,714	115	1,717	707,388
	'22	59,596	462,968	83,894	3,809	117	2,315	612,699
	'23	62,050	409,323	71,780	3,679	117	2,131	549,080

자료: 농림축산식품부 제출자료

[참고자료 3] 농사용 전력판매단가

(한국전력공사)⁴⁾

□ 농사용 전력판매단가

- 현행 전기요금체계는 「전기사업법」 제16조,⁵⁾ 한국전력의 「기본공급약관」 및 「기본공급약관시행세칙」에서 전기사용 용도에 따라 계약종별⁶⁾로 구분하여 적용하고 있으며, 농사용전력은 다른 계약종에 비해 상대적으로 저렴하게 공급하고 있음
- 계약종별: 주택용전력, 일반용전력, 교육용전력, 산업용전력, 농사용전력, 가로등, 예비전력, 임시전력

<계약종별 전력판매단가 추이: 2019~2023년>

(단위: 원/kWh)

연·월 별	주택용	일반용	교육용	산업용	농사용	가로등	심야	합계
2019	104.95	130.33	103.85	106.56	47.74	113.91	67.38	108.66
2020	107.89	131.60	103.99	107.35	48.45	114.35	67.03	109.80
2021	109.16	128.47	101.69	105.48	45.95	112.97	65.66	108.11
2022	121.32	139.10	111.53	118.66	56.89	124.53	74.26	120.51
2023	149.75	169.46	138.83	153.71	75.10	152.70	101.85	152.80

자료: 한국전력공사, 「2023년 한국전력통계」, 제93호, 2024.5.31., 146쪽에서 발췌·정리
(한국전력공사 홈페이지 > 지식센터 > 전기자료 > 전력통계 > 한국전력통계)

- 4) 한국전력공사, 「2023년 한국전력통계」, 제93호, 2024.5.31.
(한국전력공사 홈페이지 > 지식센터 > 전기자료 > 전력통계 > 한국전력통계)
- 5) 「전기사업법」 제16조(전기의 공급약관) ① 전기판매사업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기요금과 그 밖의 공급조건에 관한 약관(이하 “기본공급약관”이라 한다)을 작성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이를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 6) 한국전력공사, 「기본공급약관」 <2024.2.1.>
제55조 (계약종별의 구분)
계약종별은 전기사용계약단위의 전기사용 용도에 따라 주택용전력, 일반용전력, 교육용전력, 산업용전력, 농사용전력, 가로등, 예비전력, 임시전력으로 구분합니다

제60조 (농사용전력)
① 농사용전력은 전기의 사용 용도에 따라 다음과 같이 구분하여 적용합니다.
1. 농사용전력(갑)
양곡생산을 위한 양수, 배수(排水)펌프 및 수문조작에 사용하는 전력
2. 농사용전력(을)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계약전력 1,000kW 미만의 고객으로서 농사용전력(갑) 이외의 고객
가. 농사용 육묘(育苗) 또는 전조(電照)재배에 사용하는 전력
나. 농작물재배·축산·양잠·수산물양식업, 농작물 저온보관시설, 수산업협동조합 또는 어촌계가 단독 소유하여 운영하는 저온보관시설에 전력을 사용하는 고객으로서 농사용전력(갑) 이외의 고객
(이하 생략)

<2024년 농사용전력 전기요금표>

(2024년 7월 1일 시행)

구분		기본요금(원/kW)	전력량 요금(원/kWh)	
갑		360	41.9	
을	저압	1,150	59.5	
	고압(A,B)	1,210	여름철(6~8월)	62.2
			봄·가을철 (3~5, 9~10월)	60.2
			겨울철(11~2월)	62.2

- 주: 1. 농사용전력(갑): 양곡생산을 위한 양수, 배수펌프 및 수문조작에 사용하는 전력
 2. 농사용전력(을):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계약전력 1,000kW 미만의 고객으로 농사용전력(갑) 이외의 고객
- 농사용 육묘 또는 전조재배에 사용하는 전력
 - 농작물 재배·축산·양잠·수산물양식업, 농작물 저온보관시설, 수협 또는 어촌계의 저온보관시설
 - 농수산물 생산자의 농수산물 건조 시설, 수협 또는 어촌계의 수산물 제빙·냉동시설
 - 농작물 재배·축산·양잠·수산물양식업 고객의 해충 구제(驅除)및 유인용 전등

자료: 한전ON > 전기요금 전기요금표 > 한글 전기요금표 > 농사용

<<https://cyber.kepco.co.kr/ckepco/front/jsp/CY/E/E/CYEEHP00105.jsp>>